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육영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육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26
------------	-----

발의연월일 : 2025년 9월 25일

발의자 : 강수진, 경수현, 고영옥, 권영애,
김육영, 김경이,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오중균,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병기,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

1. 제안이유

화재로 인하여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고 신체적, 재산적인 피해 및 정신적 고통을 겪는 피해주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화재피해주민에게 임시 거주시설 및 긴급생활용품을 제공하고 심리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안 제3조~제4조)
- 다. 지원 내용(안 제5조)
- 라. 지원 취소 및 환수(안 제6조)
- 마.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2) 「재해구호법」
 -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 다. 사전협의 : 도시안전과
- 라. 입법예고 : 2025. 9. 30. ~ 2025. 10. 4.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피해주민”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의 생활안정 및 피해회복을 위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화재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한다. 다만, 구청장이 긴급한 조치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2. 국가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3. 화재피해가 경미하여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경우

제5조(화재피해주민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에게 예산의 범
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에서 지정한 임시주거시설 지원
2. 긴급급식 및 긴급생활용품 지원
3. 화재피해주민 심리상담치료 지원
4. 화재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 등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화재피해주민은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 등이 대신
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그 밖의 지원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④ 이 조례에서 정의되지 않은 사항은 「재해구호법」에 따르거나 「서울
특별시 성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지원 취소 및 환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유관 기관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에 발생한 화재피해주민부터 적용한다.

[붙임]

관계법령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약칭: 재난안전법)

[시행 2025. 7. 8.] [법률 제20653호, 2025. 1. 7., 일부개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23. 5. 1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16.>

④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4. 12. 30., 2015. 7. 24., 2019. 12. 3., 2024. 1. 16.>

[전문개정 2010. 6. 8.]

2) 재해구호법

[시행 2024. 7. 31.] [법률 제20163호, 2024. 1. 30., 일부개정]

제5조(재해구호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 및 구호지원기관의 재해구호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재해구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도지사등 및 구호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6. 1. 7., 2017. 7. 26.>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에 따라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매년 시·군·구 재해구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군·구 재해구호계획에 따라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매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재해구호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14., 2014. 11. 19., 2016. 1. 7., 2017. 7. 26.>

④ 구호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에 따라 해당 구호지원기관의 재해구호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해구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5. 31.] [서울특별시성북구조례 제1214호, 2018. 5. 31., 제정]

제4조(지원 기준)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
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
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
4.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